

이 사 회 의 사 록

(2017년 제2회 임시이사회)

<개회선언>

- 000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제2회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안 제275호 : 정관 개정(안)>

- 000 : 의안번호 제275호 정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제안설명
- 000 : 근로자이사제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조례가 있으며 모든 기관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300인 이상 기관은 근로자이사가 2명입니다. 아직은 실현단계입니다. 선출도 다 안되었고 이미 선출된 8개 기관에서 되신 분들은 의욕이 대단하세요. 노조위원장하고 노동이사가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서울시가 먼저 법이 아닌 조례로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 000 : 이게 노사정 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가입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강력하게 노동권의 굉장한 의지로 보고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 같고 그쪽은 노조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조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가 짧은데 그래서 이 시도가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는걸 아시면서 시작하신걸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영권을 사용자가 마음껏 휘두르는 것을 놔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의지로 시작한걸로 알고 있어요.
- 000 : 근로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면서 같이 해나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000 : 재단만 국한되서 본다면 근로자이사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사들은 되게 큰 이야기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평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일수도 있는데 그런걸 조율하거나 할 때 근로자이사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요.
- 000 : 어쨌든 본래 취지는 경영 쪽에 더 깊숙이 들어가려는 취지인데, 그걸 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 저는 이것은 정해진 건데 처음 시작하는 재단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 취지에 가장 맞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조화롭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 000 : 그럼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 000 :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275호 정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모두 : 네.
- 000 : 네, 그럼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정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제276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안)〉

- 000 :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제안설명
- 000 : 질문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 000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약간 규정들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기관별로 상이해서 저희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어 정의라든지 근로기준법 위배된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기관들에게 통보해준 상황입니다.
- 000 : 근데 여기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감봉한다는게 무슨말인거예요?

- 000 : 공개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재단도 개별로 면담을 해서 해마다 연봉 책정을 하나요?
- 000 : 네, 본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임금 인상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본인이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이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 000 : 이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 000 : 서울시는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여서 해당 사항이 없구요, 출연기관 중에서도 2001년 이전에 설립된 기관은 호봉제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설립된 기관은 연봉제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기관들이 이걸 따르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000 : 재단은 2002년도 설립 당시 보수규정을 만들때 당시 투출기관들의 보수규정을 취합해서 만들면서 거기에 준해서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 000 : 본인 스스로 연봉을 오픈하지 말라는 건데요. 근로자들이 급여 수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연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 000 : 공무원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 000 : 필요한 자료는 평균자료일테고 그건 요청을 하면 다 주니까 연대를 못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 000 : 임직원 퇴직금 규정에서 10조는 1항 2항 모두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의를 하면 보류할 수 있지만 생계상 그걸 동의할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 000 : 그럼 이안건은 의견이 서로 다르니 오늘 안건 처리를 하지 말고 공기업담당관에서 규정 컨설팅 결과를 재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모두 : 동의합니다.

<폐회선언>

- 000 :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제2회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포합니다.